|  |  |  |
| --- | --- | --- |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 행정처벌 안건 심리 심사규칙》에 관한 통지**  발개가감[2013]1950호  각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부성급 성(省)수도 도시, 신장생산건설병단발전개혁위원회, 물가국, 선전시시장감독관리국:  가격주관부문 행정처벌안건의 심리, 심사를 규범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행정처벌법》, 《가격행정처벌절차규정》및《반가격독점행정집법 절차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히《가격행정처벌안건심리심사규칙》을 제정하는 바, 철저하게 집행해주기를 바란다.  첨부: 《가격행정처벌안건심리심사규칙》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3년 9월 30일  첨부:  **가격 행정처벌 안건 심리 심사규칙**  **제 1장 총 칙**  **제1조** 가격주관부문 행정처벌안건의 심리, 심사를 규범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행정처벌법》, 《가격행정처벌절차규정》및《반가격독점행정집법 절차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하였다.  **제2조** 가격주관부문 행정처벌안건(이하 ‘안건’)의 심리, 심사는 본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안건의 심리란, 가격주관부문의 가격감독점검기구가 《가격행정처벌절차규정》제 28조 규정에 근거하여, 안건조사 종료 후, 안건조사보고를 기초로 안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의견처리를 제기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4조** 안건의 심사란, 가격주관부문 책임자가 《가격행정처벌절차규정》제 39조, 제 40조 규정에 근거하여 안건심리 후, 안건조사보고, 안건심리상황, 당사자의 진술 및 해명 또는 증언청취상황 등에 대해서 심사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말한다.  **제5조** 안건심리, 심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참여를 피해야 한다.  **제2장 안건심리**  **제6조** 안건의 심리는 아래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1) 가격감독점검기구 책임자가 회의를 소집하고 심리를 진행한다.  (2) 상황이 간단하고, 사실이 명확한 안건은 가격감독점검기구 책임법제 또는 안건취급처(과, 실)이 심사를 진행하고 가격감독조사기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심리를 진행한다.  (3) 각성, 자치구, 직할시 가격주관부문이 규정한 기타 방식  **제7조** 본 규칙 제 8조 제(1)항 규정의 방식을 적용한 심리인 경우, 회의 구성원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가격감독점검기구 전체 책임자  (2) 안건 취급처 (과, 실) 책임자  (3) 법제 또는 안건처(과, 실) 책임자  가격감독점검기구 책임자가 동의한 기타 작업인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8조** 본 규칙 제 6조 (1)항 규정의 방식을 적용한 심리인 경우, 심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안건조사 종결 후, 가격감독점검기구 책임자에게 안건조사에 대하여 보고하고 심리회의 소집을 요청한다.  (2) 회의 전, 안건 조사보고와 함께 증거 및 안건상황을 설명하는 기타 자료를 각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에게 보낸다.  (3) 회의는 가격감독점검기구 책임자가 주관한다.  (4) 안건 처리 인원은 진술 방안 과정, 안건사실, 성질의거, 처리의거와 건의 및 당사자 의견을 취합하여 관련 증거를 제시한다.  (5) 회의 구성원 자문안건 유관 문제  (6) 회의 구성원이 발표한 의견  (7) 가격감독점검기구 책임자는 종합하여 처리의견을 제기한다.  회의는 《안건토론기록》을 작성하고 회의 구성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본 규칙 제 6조 제(2)항의 규정 방식을 적용하여 심리한 경우, 심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안건조사 종결 후, 담당처(과, 실)은 안건조사보고를 증거 및 안건상황을 설명하는 기타 자료와 함께 법제 또는 안건취급처(과, 실)에 이송한다.  (2) 법제 또는 안건취급처(과, 실)은 안건에 대해 심사 후, 가격감독조사기구 책임자에게 심사보고를 제출한다.  (3) 가격감독조사기구 책임자는 심사보고에 근거하여 심리를 진행하여 처리의견을 제기한다.  **제10조** 안건심리의 주요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안건 취급처가 구체적인 관할권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2) 당사자의 기본정보가 정확한지의 여부  (3) 안건사실이 정확한지, 증거가 충분한지의 여부  (4) 성질규정이 정확한지의 여부  (5) 적용법률법규 규정이 정확한지의 여부  (6) 절차가 합법적인지의 여부  (7) 책임반환 및 처벌종류, 정도가 합당한지의 여부  **제11조** 안건심리의 처리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위법행위로 행정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 행정처벌 의견을 제기하고 가격주관부문 책임자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가격감독조사기구의 책임자가 서명하고 발급하는《행정처벌사건고지서》를 요청한다.  (2) 위법행위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거나 위법행위가 경미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을 수 있으며, 행정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3) 위법 사실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4) 위법행위가 2년 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5) 가격주관부문의 관할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유관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할 것을 제기한다.  (6) 위법행위가 범죄에 속할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할 것을 제기한다.  (7) 안건의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재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요구한다.  (8) 적용한 증거가 정확하지 않고, 성질규정이 부정확한 경우, 안건 처리기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한다.  (9) 절차가 위법인 경우, 안건 처리기구는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할 수 없는 경우, 법정 절차에 의거하여 재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전관 제(7), (9)항의 상황에 속할 경우, 보충조사 또는 재조사 후, 안건심리를 재 진행해야 한다.  **제12조** 가격주관부문은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사건고지서》를 발급한 후, 당사자의 진술, 해명 또는 청문에서 사실, 이유 또는 증거성립을 제기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필요 시, 재차 심리를 진행하여 처리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장 안건심사**  **제13조** 본 규칙 제 11조 제(1), (2), (3), (4), (5), (6) 항 안건 심리의 처리의견에 속할 경우, 가격주관부문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심사한다.  **제14조** 가격주관부문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심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건조사보고  (2) 안건심리의 처리의견  (3) 당사자의 진술 및 해명의견 또는 증언청취상황  (4) 안건상황 설명의 기타 내용  **제15조** 가격주관부문 책임자는 심사상황에 근거하여, 각각 아래와 같이 결정을 내린다.  (1) 위법행위로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상황의 경중 및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2) 위법행위가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 줄 수 없거나 위법행위가 경미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는다.  (3) 위법사실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을 줄 수 없다.  (4) 위법행위가 2년 내에 발견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을 주지 않는다.  (5) 가격주관부문 관할에 속하지 않을 경우, 유관 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6) 위법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범기관으로 이송된다.  **제16조** 상황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로 경중의 행정처벌을 내려야 할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격주관부문의 책임자는 전체토론을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무원가격주관부문은 조사 처리하는 상황이 복잡하거나 위법행위가 중대하여 비교적 중대한 행정처벌을 내려야 하는 안건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에게 위법소득 몰수로 2억 위안 이상의 행정처벌을 내려야 하는 경우  (2) 당사자에 1억 위안 이상의 벌금 행정처벌을 내려야 하는 경우  (3) 영업정지의 행정처벌을 내려야 하는 경우  (4) 기타 안건의 상황이 특별히 복잡하고 중대한 경우  성급이하 가격주관부문이 조사처리하는 상황이 복잡하거나 위법행위가 중대하여 비교적 중대한 행정처벌을 내려야 하는 안건의 인정 기준은 각성, 자치구, 직할시 가격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가격주관부문의 책임자는 집단토론을 통해서 아래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가격주관부문 집무회의를 소집한다.  (2) 가격주관부문의 책임자가 회람하고 서명한 문건  업무회의방식은 집단토론을 채택하고 업무회의의 절차, 구성원 등은 각급 가격주관부문의 현행회의제도에 따라 집행한다.  **제4장 부 칙**  **제18조** 이하 사항은 가격감독점검기구는 본 규칙 제2장의 규정을 참고하여 심리 또는 토론을 진행하여 처리의견을 제기한 후 가격주관부문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결정한다.  (1) 하급가격주관부문이 조사한 안건의 이양  (2) 특별조사의 처리원칙과 정책 한계의 명확성  (3) 당사자에게 관련 영업을 중지할 것을 명령  (4) 가격독점안건의 조사중지, 조사회복, 조사종결  (5) 기타주요사항  **제19조** 본 규칙에서 말하는 가격주관부문의 책임자란, 가격관리직능을 갖춘 발전개혁위원회의 주임 또는 권한을 부여 받은 가격작업을 담당하는 부주임 또는 단독 설치 물가국의 국장을 의미한다.  본 규칙에서 말하는 가격주관부문의 책임자란, 발전개혁위원회(물가국)의 주임(국장)과 모든 부주임(부국장)을 의미한다.  **제20조** 각성, 자치구, 직할시 가격주관부문은 본 규칙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1조** 본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 국가계획위가 2001년 6월 6일 발표한 《가격주관부문안건심리위원회작업규칙》은 동시에 폐지한다. |  | **国家发展改革委**  **关于印发《价格行政处罚案件审理审查规则》的通知**  发改价监[2013]1950号  各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副省级省会城市、新疆生产建设兵团发展改革委、物价局，深圳市市场监督管理局：  为规范价格主管部门行政处罚案件的审理、审查，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价格行政处罚程序规定》和《反价格垄断行政执法程序规定》，特制定了《价格行政处罚案件审理审查规则》，现印发给你们，请认真贯彻执行。  附件：《价格行政处罚案件审理审查规则》  国家发展改革委  2013年9月30日  附件:  **价格行政处罚案件审理审查规则**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规范价格主管部门行政处罚案件的审理、审查，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价格行政处罚程序规定》和《反价格垄断行政执法程序规定》，制定本规则。  **第二条** 价格主管部门行政处罚案件（以下简称案件）的审理、审查，适用本规则。  **第三条** 案件的审理是指价格主管部门的价格监督检查机构依据《价格行政处罚程序规定》第二十八条规定，在案件调查终结后，以案件调查报告为基础，对案件进行审核并提出处理意见的过程。  **第四条** 案件的审查是指价格主管部门负责人依据《价格行政处罚程序规定》第三十九条、第四十条规定，在案件审理后，对案件调查报告、案件审理情况、当事人的陈述和申辩意见或者听证情况等进行复核并作出决定的过程。  **第五条** 参加案件审理、审查的人员与案件有直接利害关系的，应当回避。  **第二章 案件审理**  **第六条** 案件的审理采取以下方式：  （一）由价格监督检查机构负责人召集会议进行审理；  （二）情节简单、事实清楚的案件，由价格监督检查机构负责法制或者案审的处(科、室)进行审核，并报价格监督检查机构负责人进行审理；  （三）各省、自治区、直辖市价格主管部门规定的其他方式。  **第七条** 采用本规则第六条第（一）项规定的方式审理的，会议成员包括：  （一）价格监督检查机构全部负责人；  （二）承办案件的处（科、室）负责人；  （三）法制或者案审处（科、室）负责人。  经价格监督检查机构负责人同意的其他工作人员可以列席会议。  **第八条** 采用本规则第六条第（一）项规定的方式审理的，审理程序如下：  （一）案件调查终结后，案件调查报告上报价格监督检查机构负责人，提请召开会议审理；  （二）会议前将案件调查报告，连同证据及说明案件情况的其他材料分送各参会人员；  （三）会议由价格监督检查机构负责人主持；  （四）案件承办人员陈述办案过程、案件事实、定性依据、处理依据和建议以及当事人的意见，并出示相关证据；  （五）会议成员询问案件有关问题；  （六）会议成员发表意见；  （七）价格监督检查机构负责人归纳并提出处理意见。  会议应当制作《案件讨论记录》，交由会议成员签名。  **第九条** 采用本规则第六条第（二）项规定的方式审理的，审理程序如下：  （一）案件调查终结后，由承办处（科、室）将案件调查报告，连同证据及说明案件情况的其他材料移送法制或者案审处（科、室）；  （二）法制或者案审处（科、室）对案件进行审核后，向价格监督检查机构负责人提交审核报告；  （三）价格监督检查机构负责人根据审核报告进行审理，并提出处理意见。  **第十条** 案件审理的主要内容包括：  （一）对所办案件是否具有管辖权；  （二）当事人的基本情况是否清楚；  （三）案件事实是否清楚、证据是否充分；  （四）定性是否准确；  （五）适用法律法规规章是否正确；  （六）程序是否合法；  （七）责令退还及处罚种类、幅度是否适当。  **第十一条** 案件审理的处理意见包括：  （一）确有应受行政处罚的违法行为的，提出给予行政处罚的意见，并提请价格主管部门负责人或者经授权的价格监督检查机构负责人签发《行政处罚事先告知书》；  （二）违法行为依法不予行政处罚或者违法行为轻微，依法可以不予行政处罚的，提出不予行政处罚的意见；  （三）违法事实不能成立的，提出不得给予行政处罚的意见；  （四）违法行为在二年内未被发现的，提出不再给予行政处罚的意见；  （五）不属于价格主管部门管辖的，提出移送有关行政机关处理的意见；  （六）违法行为已构成犯罪的，提出移送司法机关的意见；  （七）案件事实不清、证据不足的，要求重新调查或者补充调查；  （八）适用依据错误、定性不准确的，要求案件承办机构予以改正，或者直接予以纠正；  （九）程序违法的，要求案件承办机构予以改正；无法改正的，要求依法定程序重新进行调查。  属于前款第（七）、（九）项情形的，补充调查或者重新调查后，应当再次进行案件审理。  **第十二条** 价格主管部门向当事人发出《行政处罚事先告知书》后，当事人在陈述、申辩或者听证中提出的事实、理由或者证据成立的，应当采纳当事人的意见；必要时，可以再次进行审理，重新提出处理意见。  **第三章 案件审查**  **第十三条** 属于本规则第十一条第（一）、（二）、（三）、（四）、（五）、（六）项案件审理的处理意见，应当报价格主管部门负责人审查。  **第十四条** 上报价格主管部门负责人审查的材料包括：  （一）案件调查报告；  （二）案件审理的处理意见；  （三）当事人的陈述和申辩意见或者听证情况；  （四）说明案件情况的其他材料。  **第十五条** 价格主管部门负责人根据审查情况，分别作出如下决定：  （一）确有应受行政处罚的违法行为的，根据情节轻重及具体情况，作出行政处罚决定；  （二）违法行为依法不予行政处罚或者违法行为轻微，依法可以不予行政处罚的，不予行政处罚；  （三）违法事实不能成立的，不得给予行政处罚；  （四）违法行为在二年内未被发现的，不再给予行政处罚；  （五）不属于价格主管部门管辖的，移送有关行政机关处理；  （六）违法行为已构成犯罪的，移送司法机关。  **第十六条** 对情节复杂或者重大违法行为给予较重的行政处罚，在作出行政处罚决定前，价格主管部门的负责人应当集体讨论决定。  国务院价格主管部门查办的情节复杂或者重大违法行为给予较重的行政处罚的案件认定标准是：  （一）拟对单个当事人作出没收违法所得2亿元以上行政处罚的；  （二）拟对单个当事人作出1亿元以上罚款行政处罚的；  （三）拟作出责令停业整顿的行政处罚的；  （四）其他案情特别复杂、重大的。  省级以下价格主管部门查办的情节复杂或者重大违法行为给予较重的行政处罚的案件认定标准由各省、自治区、直辖市价格主管部门规定。  **第十七条** 价格主管部门的负责人进行集体讨论可以采取以下方式：  （一）召开价格主管部门办公会议；  （二）价格主管部门的负责人传签文件。  采取办公会议方式进行集体讨论的，办公会议的程序、成员等按照各级价格主管部门现行会议制度执行。  **第四章 附 则**  **第十八条** 以下事项，价格监督检查机构参照本规则第二章的规定进行审理或者讨论，提出处理意见后上报价格主管部门负责人决定：  （一）移交下级价格主管部门查处的案件；  （二）明确专项检查的处理原则和政策界限；  （三）对当事人责令暂停相关营业；  （四）价格垄断案件的中止调查、恢复调查、终止调查；  （五）其他重要事项。  **第十九条** 本规则所称价格主管部门负责人，是指具有价格管理职能的发展改革委的主任或者经授权的负责价格工作的副主任，或者单设物价局的局长。  本规则所称价格主管部门的负责人，是指发展改革委（物价局）的主任（局长）和所有副主任（副局长）。  **第二十条** 各省、自治区、直辖市价格主管部门可以根据本规则制定实施细则。  **第二十一条** 本规则自2014年1月1日起施行。原国家计委2001年6月6日发布的《价格主管部门案件审理委员会工作规则》同时废止。 |